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수의(兽医) 위생 및 검역·검사조건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한국 측"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중국 측"이라 한다)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 대한 수의(兽医) 위생 및 검역·검사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¹.

제1조

한국 측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 대한 검역·검사와 검역·위생증명서 발급을 책임진다.

제2조

한국 측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 대한 도축, 절단, 가공, 보관, 운반, 검역·검사 항목, 방법, 절차, 기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중국 측에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상기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2개월 전에 중국 측에 통보한다.

제3조

한국 측은 가금류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할 책임이 있고, 제5조에 명시된 가금류 질병의 발생 상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중국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 측은 가금육 제품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계획과 병원성 미생물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중국 측에 연간 계획 및 관련 보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시, 중국 측은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기 관리 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 측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¹본 약정은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간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음

제4조

한국 측은 한국이 동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에서 부화, 사육 및 도축되었으며, 유효한 이력정보를 구비한다.

나. 한국 내 뉴캐슬병과 고병원성 조류플루엔자로 인한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다. 과거 6개월 간 닭전염성에프(F)낭병, 마렉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조류클라미디아증(avian chlamydiosis), 가금티푸스, 추백리,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조류결핵(avian tuberculosis), 가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라. 과거 6개월 간 한국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가금류 질병 발생으로 어떠한 제한과 예찰의 대상이 아닌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제6조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중국 측에 등록된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을 생산하는 가공장은 한국과 중국의 수의위생 및 공중보건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기 도축장 및 가공장은 중국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에 따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에 등록되어야 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등록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은 중국으로 수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한국 정부의 수의관은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한국과 중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반드시 생체 및 해체

검역·검사를 거쳐야 한다.

- (2)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에 대해서 본 약정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며, 건강하고 어떠한 전염병 임상증상이 없고 도체 및 내장에 병리적 병변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3)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중국 측에 등록된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4) 닭고기 전용 생산라인에서 가공된 제품이며,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에는 기타 동물 유래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5)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재료 및 첨가물은 한국 및 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국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 (6) 원료 및 부재료, 제품의 동물약품,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및 기타 유독 유해물질 잔류량은 한국과 중국에서 규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7) 제품은 한국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생산되었으며,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고 한국과 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국가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8) 삼계탕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식용에 적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은 제5조에 부합되지 않는 닭과 함께 도축되어서는 안 된다.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부합되지 않는 닭고기와 함께 가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품은 가공 및 보관 과정에서 식별 가능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양호한 이력체계를 갖추고, 본 약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삼계탕 보관 창고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을 다른 제품과 구분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은 국제위생기준에 부합하는 무독 무해한 사용하지 않은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며, 중국의 포장식품표시 관련법규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내외부포장에는 원산지 국가, 제품명, 작업장 등록번호, 생산 단위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외부포장에는 제품 규격, 원산지(주/성/시까지 상세표시), 목적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온도 등 내용이 중국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목적지는 중국이어야 하며, 한국 측의 검역·검사 표식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10조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보관 및 운송 과정은 수의 위생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독 유해 물질로부터의 오염이 방지되어야 하고, 해당 제품은 보관 및 운송에 적합한 온도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고 봉인번호는 검역·위생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품의 포장 운송 과정에서 개봉되거나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 대해서는 매건 검역·위생증명서 원본 1부가 첨부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은 한국과 중국의 수의위생 및 공중보건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과 본 약정에 부합한다는 증명되어야 한다.

검역·위생증명서는 반드시 중국어, 한국어 및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증명서의 서식과 내용은 한국과 중국 양 측간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중국 측의 수입 검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발급된 검역·위생증명서에 대한 전자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 측은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하기 전에 검역필인,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승인된 수의관의 서명, 검사필 표지 등 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 측은 상기 양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 6주 전까지 중국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또는 오염사건 발생 시 한국 측은 즉시 중국 측에 통보하며, 해당 가축 전염병 또는 오염사건 발생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련 지역에서 생산되는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중단한다. 전염병 혹은 오염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한국에서 수출 재개를 희망할 경우 중국 측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 대하여 중국 측이 본 약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중국 측은 이를 즉시 한국 측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발 방지 등 관련 사항에 대응한 조치를 중국 측에 알리는 등 조사와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측과 협력한다.

제13조

본 약정에서의 삼계탕은 닭고기를 주요 원료로 열처리하여 만든 닭고기 제품이며, 가공과정에서 뉴캐슬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한 가열 온도와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닭의 내장을 제외한 도체를 의미한다.

삼계탕에 사용되는 인삼은 중국의 신자원식품 관리규정에 부합된다.

제14조

본 약정은 양국의 합의 하에 수정될 수 있다. 본 약정은 3년간 유효하며 약정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어느 한 쪽에서 수정이나 종료 의사를 별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3년 연장된다.

제15조

본 약정은 2015년 10월 31일에 서울에서 체결되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3부씩 작성되었다. 각 문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측간 협의하여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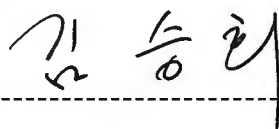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대표하여

